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이나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해서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페로니오븀, 페로니켈 등 58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서민 생활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가공용 옥수수, 천연가스 등 14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0퍼센트에서 1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며,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 0퍼센트에서 20퍼센트까지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할당관세의 적용 물품 및 세율 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통상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2. ~ 1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칙 중 “별표 1부터 별표 10까지 및 별표 12부터 별표17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부터 별표 17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적용시한) ①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

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③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④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⑤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하여는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2026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0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0	

[별표 2]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 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찢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0408	1	알의 노른자위			
0408	1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i>Gallus dom esticus</i>)종으로 한 정한다]의 것	0	4,000톤
0408	19	기타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i>Gallus dom esticus</i>)종으로 한 정한다]의 것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닭[갈루스 도메스 티쿠스(<i>Gallus dom</i>	0	

			<i>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408	99	기타			
		1.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i>Gallus domesticus</i>)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	1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	11	건조한 것	식품 원료용의 것	0	
3502	19	기타	식품 원료용으로 액체 또는 냉동한 상태의 것	0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는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	10	초본류 딸기		5	5,000톤
0811	90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5	10,000톤

1512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9	기타		
		1. 정제유(精製油)		
		가. 해바라기씨유	0	5,000톤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	1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1804	00	코코아 버터(지방이나 기름)	0	수입 전량
1805	00	코코아 가루(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0	수입 전량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 · 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20	파인애플		15	8,000톤
2008	30	감귤류 과실	유자는 제외한다.	15	1,000톤
2008	9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	97	혼합물			
		1. 과실 칵테일			
		가.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5,500톤
		나. 기타		15	
		2. 기타	과실 샐러드 및 그 밖의 과실 혼합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15	
2008	99	기타			
		6. 기타	과실로 한정한다.	15	7,500톤
2009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9	7	사과주스			
2009	79	기타		15	1,500톤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6,5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0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0	

[별표 3]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0301		활어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속]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 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하 다)		3	50톤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 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 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 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에 상관없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 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 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乳糖)·단백질·무기질의 전부나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乳糖)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유장 농축 단백질	사료용	0	21,000톤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manioc)·칩뿌리·살렘(salep)·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塊莖)[얇게 썬 것이나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한 것·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	10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10	60,000톤
		나. 펠릿(pellet)	사료용	0	100,000톤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	1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	11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0901	12	카페인을 제거한 것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0	80,000톤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0	11,000,000톤
		3. 기타	가공용	0	1,900,000톤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	1	전분			
1108	13	감자로 만든 것	식품용	0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텍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190,000톤
3505	10	텍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식품용[텍스트린과 가용성 전분(아밀로젠)을 제외한다]	0	
3505	20	글루(glue)	식품용	0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	90	기타			
		1.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0	1,100,000톤
1214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	90	기타			
		1. 사료용 뿌리채소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500,000톤
2308	00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 기타	사료용	0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	9	기타			
1701	91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5	120,000톤
1701	99	기타		5	
1801	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볶지 않은 것		0	수입 전량
2101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			

		·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2101	1	커피의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	11	추출물(extract)·에센스(essence)·농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인스턴트 커피	3	3,000톤
			2. 기타	0	수입 전량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 없다)			
2207	10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1. 조주정(粗酒精)		0	156,000

					킬로리터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이나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	30	밀에서 나온 것	사료용	0	40,000톤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	20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사료용	0	수입 전량
			2. 버섯 재배용	0	25,000톤
2304	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사료용	0	2,000,000톤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	90	기타			
		4. 기타	대 용 유 배 합 사 료 제조용	0	12,000톤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	2	형석(螢石)			
2529	21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제철용		
		2. 기타		0	수입 전량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 (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 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 외한다)			
2620	9	기타			
2620	99	기타	블랙매스 또는 블 랙파우더(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	0	수입 전량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나프타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0	170,000,000 배럴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 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 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 ·금속과산화물			
2825	20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2. 수산화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2825	50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2. 수산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 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 과 요드화물·산화요드화물			수입 전량
2827	4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	41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2. 수산화염화구리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3		황산염 · 명반 · 과산화황산염 (과황산염)		
2833	2	그 밖의 황산염		
2833	25	황산구리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아세탈과 과산화헤미아세탈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	30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0	

		것으로 한정한다)			
2909	50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	7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 유도체			
2914	7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 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 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 로소화유도체			
2915	3	초산에스테르			

2915	39	기타	초산아밀, 초산이 소아밀, 초산메틸, 초산이소부틸, 초 산 2-에톡시에틸 은 제외하고, 「농 약관리법」에 따 라 등록된 농약원 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 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 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 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 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	1	불포화비 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 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 들의 유도체				
2916	1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 劑)(「농약관리 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하 다)	0		
2916	2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 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 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				

		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6	3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	31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8	30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18	9	기타			
2918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락 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 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 로소화유도체			
2919	90	기타			
		1. 인산에스테르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젠화수소의 에스 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젠화유도체 · 술폰 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 트로소화유도체			

2920	1	티오인산에스테르(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11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2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	2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0		

		으로 한정한다)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	4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 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	42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1	43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 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1	4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	50	아미노-알코올페놀·아미노산 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 노화합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0		

		으로 한정한다)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	1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12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포스파미돈(ISO)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24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	21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4	25	알라클로르(ISO)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24	29	기타			
		3. 기타			
		다.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 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	1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1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5	2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28	00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	20	티오카르바메이트와 디티오카르바메이트			
		1. 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 디티오카르바메이트			
		가. 농약원제(農藥原劑)		0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30	30	티우람모노술파이드·티우람디술파이드·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티우람디술파이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0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	4	비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	4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	할로겐화 유기인 유도체			
2931	54	트리클로르폰(ISO)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1	59	기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0	

			으로 한정한다)			
293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 고리 화합물				
2932	1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 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 를 가지는 화합물				
2932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2932	20	락톤				
		10.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 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2	9	기타				
2932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	1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11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1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2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2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3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3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4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	4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5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5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6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	69	기타			
		3. 기타			
		나.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3	7	락탐			
2933	79	그 밖의 락탐	1-비닐-2-피롤리돈은 제외하고,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농약원제(農藥原劑)로 한정한다.	0	
2933	9	기타			
2933	99	기타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	10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 기타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20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4	9	기타			
2934	99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35		술폰아미드			
2935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0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941		항생물질			
2941	20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30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941	90	기타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	4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	42	비이온성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 장조절제 · 소독제와 이와 유사 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 을 한 것 · 조제품으로 한 것 ·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 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 파리 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			
3808	9	기타			
3808	91	살충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3808	92	살진균제			
		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으로 한정한다)		0	
3808	93	제초제 · 발아억제제 · 식물성장 조절제	제초제, 식물성장 조절제[「농약관 리법」에 따라 등 록된 농약원제(農	0	

			藥原劑)로 한정한다]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2. 향생물질 제조과정의 중간생산물			
		가.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0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	9	기타			
2836	91	탄산리튬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1. 비료나 비료제조용		0	수입 전량
		2. 기타		0	수입 전량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태블릿(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	3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 이암모늄)	비료 제조용	0	수입 전량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	1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	11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 기타	0	수입 전량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 3203호 · 제3204호 · 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	1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	11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 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3	수입 전량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	10	인조흑연			
		1. 이차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으로 한정한다)			
3815	1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	12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 속화합물의 것	백금이나 백금화 합물의 것(연료전 지 제조용으로 한 정한다)	0	5톤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 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 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 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 함한다)			
3824	9	기타			
3824	99	기타			
		3. 기타	흑연 화합물(이차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	1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0	70,000톤
3901	20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0	40,000톤
3901	4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농업용	0	10,000톤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 시트(sheet) · 필름 · 박(箔) · 스트립			
3921	1	셀룰러			
3921	19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6. 기타	이온교환막(연료 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	1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104	1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수입 전량
4104	19	기타	1	
4104	4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	41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1	
4104	49	기타	1	
5002	00	생사(낀 것은 제외한다)		200톤
		1. 백잠사(white silk)		
		가. 20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나. 20 데시텍스 초과 25.56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다. 25.56 데시텍스 초과 28.89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라. 28.89 데시텍스 초과 36.67 데시텍스 이하인 것	0	
		마. 36.67 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0	
		2. 옥사(doupion silk)	0	

		3. 기타		0	
6804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	2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	21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반도체 웨이퍼 제조용	0	수입 전량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탄소섬유·탄소섬유의 제품·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	1	탄소섬유, 비(非)전기용의 탄			

		소섬유 제품, 비(非)전기용의 그 밖의 흑연 제품이나 탄소 제품			
6815	13	그 밖의 탄소섬유 제품	연료전지 전극기 재 제조용	0	수입 전량
7006	00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 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 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 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 은 제외한다)			
		2.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 크(blank mask)용		0	수입 전량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 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 [예: 실·로빙(roving)·직물]			
7019	6	기계적으로 집착한 직물			
7019	63	촉촉하게 직조한 직물[실로 짠 평직물로서, 도포·적층하지 않 은 것]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 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 는 단사가 136텍	0	수입 전량

			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동박적층판(CCL)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7020	0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1. 공업용			
		가. 석영유리로 만든 것			
		4) 기타	반도체 제조용	3	수입 전량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	1	플라티늄(platinum)			
7110	11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자동차 매연 저감용 촉매 제조용	0	13톤
			2. 수소차 연료전지 촉매 제조용	0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 854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7112	9	기타			
7112	92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2. 기타	폐촉매	0	수입 전량
7112	99	기타			
		1. 잔재물의 것	구리 전해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귀금속 및 희소금속 원재료용	0	수입 전량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	2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	21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	41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0	수입 전량
7202	49	기타		0	수입 전량
7202	60	페로니켈(ferro-nickel)		0	수입 전량
7202	9	기타			
7202	93	페로니오븀(ferro-niobium)		0	수입 전량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	90	기타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OLED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	1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	11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동박 적층판(CCL) 제조용	0	수입 전량

7502		니켈의 괴(塊)			
7502	10	합금하지 않은 니켈			
		2. 기타	제철용 또는 이차 전지 제조용	0	수입 전량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	1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 을 포함한다)			
7606	12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것		
			1. 전기자동차 이 차전지 케이스 제조용	0	19,000톤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 루미늄협회 표 준 규격 A6000 계열로 한정하 다)	0	9,000톤
8007	00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반도체 노광공정 에 사용되는 것	2	수입 전량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	20	티타늄의 괴(塊), 가루			
		1. 괴(塊)		0	수입 전량
8108	3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티타늄 회수용	0	수입 전량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	30	압연기용 롤	단조제의 것(제철 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	1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	11	금속으로 만든 것	영구자석(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 모터 제조용 부품으로 한정한다)	0	6,000톤

			다)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	90	부분품	전극(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	1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8514	19	기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초고온탄화로 {연료전지 제조용 기체확산층(GDL)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2. 소성로(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	0	수입 전량

			정한다)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	4	계전기(繼電器)			
8536	49	기타	고전압 릴레이(환경친화적 자동차용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의 제어 · 연결용으로 한정한다)	0	1,300톤
8545		탄소전극 · 탄소브러시 · 램프용 탄소 · 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 지에 상관없다)			
8545	90	기타	분리판(연료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0	수입 전량
8549		전기·전자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8549	1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8549	14	선별되지 않은 것(납·카드뮴·수은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 망간을 함유한 것	폐배터리, 폐배터리의 스크랩	0	수입 전량
		3. 기타	및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스크랩(이차전지 원재료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0	
8549	19	기타		0	
8549	3	그 밖의 전기·전자 조립품과 인쇄회로기판			
8549	31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폐인쇄회로기판 및 폐인쇄회로기판의 스크랩(귀금속 및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0	수입 전량
		3. 기타		0	
8549	39	기타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제2조 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 회수용으로 한정한다)	0	
		3. 기타		0	
8549	9	기타			
8549	91	일차전지·축전지·수은 스위치·음극선관에서 얻어진 유리·그 밖의 활성화된 유리를 함유하는 것 또는 카드뮴·수은·납·폴리염화비페닐(PCBs)을 함유한 전기·전자부품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0	
		3. 기타		0	
8549	99	기타			
		2. 유리·카드뮴·망간을 함유한 것		0	
		3. 기타		0	

[별표 4]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2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2	

[별표 5]

202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포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09	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 석유 가.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나.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다.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라.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마.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바.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프로판 및 부탄 제조에 사용되는 원유	1	16,500,000 배럴

		사.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아.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자. 기타 2. 역청유(瀝靑油)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2	프로판		1	수입 전량
2711	13	부탄		1	

[별표 6]

2026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호	소호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 의 탄화수소			
2711	1	액화한 것			
2711	11	천연가스		1	수입 전량
2711	2	가스 상태인 것			
2711	21	천연가스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관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
관세율을 인하하는 물품과 그 세	-----
율 및 한계수량은 <u>별표 1부터 별</u>	----- <u>별표 1부터 별</u>
<u>표 18까지</u> 와 같다.	<u>표 6까지</u> -----.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연 락 처	(044) 215 - 4431